



국방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9.28] [방위사업청훈령 제422호, 2017.9.28, 제정]

방위사업청(획득정책과) 02 - 2079 - 637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방위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, 구축, 등록, 운영, 활용,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연구시설장비"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,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.
2. "국방연구개발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법 제18조제3항·제4항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
 - 나. 법 제18조제6항의 신개념기술시범사업
 - 다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과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(이하 "연구인프라사업"이라 한다)
3. "출연기관"이란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(이하 이 규정의 모든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축비용으로 본다)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적용한다. 다만, 제6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고도의 비닉성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장 기획 및 심사

제4조(기획 실시)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최초로 제출할 때 별표 5의 연구시설·장비 구축계획서(이하 "구축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축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1. 구축할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
2.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연구시설장비와의 차별성
3.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방법 및 비용의 적정성, 구축부지 확보계획 등
4. 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, 운영·활용계획 및 운영비용 등
5.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

③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체 연구시설 장비심사위원회(이하 "자체 연구시설장비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운영하여야 하며, 구축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 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출연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획득기획국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축계획서가 포함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검토하여 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 요청)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·장비 심사요청서(이하 "심사요청서"라 한다)를 해당 연구시설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,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(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)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사요청서 승인) 획득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·승인한다.

1. 사업목적 부합성
2. 연구시설장비 중복성
3. 연구시설장비 활용성
4. 연구시설장비 운영계획성
5. 연구시설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

제7조(중복성 검토) ①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및 심사요청서 작성 시 별표 7에 따라 자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와의 중복 구축여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시설·장비 종합정보시스템(ZEUS: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)을 통한 타 기관과의 연구시설장비 중복 구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그 검토 결과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복성 검토 결과가 별표 7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장 구축 및 등록

제8조(연구시설장비의 구축) ①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심사 및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는 제2장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연구시설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와 별개로 심사요청서를 검토하도록 한다.

1. 심사요청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2. 심사 이후, 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, 사양조정 등으로 30% 이상 금액변경(증가/감소)이 발생한 경우
3. 사업(과제)계획 변경, 해당 장비 단종,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사요청서가 승인된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
4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구축 후 최초 요구 조건 등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수행결과를 포함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결과를 획득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·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
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은 최종적으로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정보등록)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하여 구축 완료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‘국방연구시설·장비 등록번호’를 생성하고, 별표 10의 ‘국방연구시설·장비 정보등록증’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·장비 표지를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.

④ 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.

⑤ 출연기관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제출한 시점에 연구시설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.

제4장 운영 및 활용

제10조(연구시설·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)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등록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시설·장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 및 관리) ①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
 2.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
 3. 저활용·유휴·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·감독
 4.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·지출 관리 등의 점검 등
- 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 및 운영 간 부품의 정기적인 교체,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1, 12를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·장비 종합관리체계의 운영 및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활용범위) ①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·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공동활용) ①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·장비 활용요청서(이하 "활용요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1.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: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
 2.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: 획득정책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

제5장 처 분

제14조(처분대상) ① 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품명, 규격, 수량 및 가액
2.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
3. 유상 및 무상의 구분
4. 처분시기(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)
5. 처분사유
6. 처분에 따른 조건
7. 인수자

제15조(처분절차) ① 출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처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하고 처분완료 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별표15의 연구시설·장비 처분결과서(이하 "처분결과서"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처분결과서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.

제6장 조 사

제16조(조사)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청 또는 출연기관 소유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(후속조치)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방연구시설·장비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22호, 2017.9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「출연기관 연구시험시설사업관리규정」은 폐지한다.